

국제투자중재에서 제3자 자금조달 제도의 주요 법적 쟁점

Major Legal Issues with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안 건 형*

Keon-Hyung Ahn

김 성 룡**

Sung-Ryong Kim

조 인 호***

In-Ho Joe

〈 목 차 〉

I. 서론	IV. 결론 및 시사점
II. 국제투자중재의 현황	참고문헌
III. 국제투자중재에서 제3자 자금조달의 주요 법적 쟁점	Abstract

주제어 : 투자자-국가간 중재, 투자중재의 현황, 제3자 자금조달, 제3자 자금조달 분
쟁사례, 변호사-고객간 특권

* 대한상사중재원 차장, 경영학박사(무역상무(International Commerce and Law) 전공), 주저자.

** 대한상사중재원 과장, 경영학박사(국제상학(International Commerce) 전공), 교신저자.

*** 대한상사중재원 대리, 법학석사, 공동저자.

I. 서론

중재는 전통적인 분쟁해결의 방법이었던 소송의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수단 중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제도로서 확고한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¹⁾

대부분의 산업이 그렇듯이, 어떤 특정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주변산업 역시 발전하기 마련이다. 중재 분야 역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관련 주변산업 역시 함께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 국가가 국제중재의 허브로써 각광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국가에 위치한 국제중재에 경쟁력을 갖춘 로펌들의 사건 수입 역시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로펌들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로펌들 역시 서둘러 그러한 경쟁체제에 가세하기 위해 그 지역에 진출하려 할 것이며, 이는 결국 해당 국가 법률시장의 고용 창출 및 토종 로펌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²⁾

이와 관련하여, 중재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의 Maxwell Chambers Private Limited.(이하 'Maxwell Chambers'라 한다)³⁾ 사례를 꼽곤 한다. 실제로, Maxwell Chambers가 설립되기 이전인 2008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접수된 중재신청 건수는 99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 188건, 그리고 2012년에는 235건이 접수되어⁴⁾ 사상 최고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

1)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2012년에 접수된 중재신청 건수가 360건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또 다시 경신하였으며,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Michael Lee 변호사에 따르면, ICDR의 국제중재 사건 역시 2012년에 996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또한 ICDR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한다.

2) 중재제도 발전에 따른 주변산업의 발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제중재의 경우 심리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관련 당사자들(중재 판정부, 증인, 경우에 따라서는 통역사, 속기사 등)이 자주 모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중재에 있어 심리를 개최하는 경우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에 걸쳐 집중심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수십 명의 중재 관련 당사자들이 심리 참석을 위해 해당 국가에 모이게 되고 이 기간 동안 이들이 해당 국가에서 숙식, 심리 시설 대여, 관광 등에 사용하는 돈은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따라서 국제중재는 각국 정부로서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을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Maxwell Chambers는 한 지붕 아래 세계 최고의 국제 ADR 기관들을 유치하고 동시에 최고 수준의 심리 시설 및 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고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ADR 콤플렉스 빌딩을 조성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아시아 지역 ADR Hub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2009년 8월에 설립되었다. 정부 또한 세계 혜택 및 국가 차원의 국제중재 홍보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4) 좀 더 상세한 내용은 SIAC 홈페이지 <http://www.siac.org.s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39&Itemid=73> 참조(2013. 4. 26, 21:30 최종접속).

하는 등 그 발전의 속도가 놀라울 정도이다.

한편, 중재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금융 산업의 중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 관심 사례로 국제중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자금조달 제도⁵⁾를 들 수 있다.

국제중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자금조달 제도는 중재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개인 또는 기업)가 자금 신청인의 중재절차에 소요되는 법률비용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금 제공자의 직접경비를 포함한 분쟁해결(화해 또는 중재판정)의 결과물로서 자금 신청인이 얻게 되는 배상금의 일부를 분배 받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⁶⁾

제3자 펀딩업체들은 상사중재 관련 사건들뿐만 아니라, 전문학적인 분쟁금액과 중재비용을 수반하는 투자중재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최근 들어 투자중재 분야에서 제3자 자금조달과 관련된 분쟁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분쟁들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클레임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자금 제도에 관해 국내에 소개된 선행연구로는 안건형(2013)⁷⁾의 논문이 유일한데, 이 논문에서는 제3자 자금조달 제도의 의의, 산업현황, 주요 국가별 법적 환경 그리고 동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을 뿐, 국제중재에서 제3자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 투자중재의 의의 및 현황, 그리고 국제투자중재에서 최근 들어 발생하기 시작한 제3자 자금조달 관련 분쟁사례와 주요 법적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II장에서 투자중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투자중재에서 제3자 자금의 주요 법적 쟁점들로서 1) 제3자 자금업체와 신청인 간 이해충돌에 따른 법적 쟁점과 2) 중재절차 상의 법적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5) 본 논문에서는 "Third Party Funding (TPF)"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Funding"이라는 용어에 대해 '자금조달'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문맥에 따라서는 '펀딩'이라는 용어도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6) 안건형, "클레임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자금조달 제도 - 경영학과 법학 분야의 新융합과생상품을 중심으로", 『貿易學會紙』 제38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3, 236면(인용); S. Khouri, K. Hurford and C. Bowman,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nd treaty arbitration - a panacea or a plague? A discussion of the risks and benefits of third party funding," *Transnational Dispute Management*, vol.8, issue 4 (October 2011), p.3(재인용).

7) 안건형, 전제논문, 233-255면 참조.

II. 국제투자중재의 현황

1. 서설

중재라 함은 일반적으로 상사에 관한 사적 분쟁해결체도로 인식된다. 대한민국 중재법에는 중재를 사법(私法)상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관정에 의한 해결절차라 정의하고 있다.⁸⁾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관련 국민적 논란이 되기도 했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역시 중재 영역에 속하는 분쟁해결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동 제도는 국가 간 협정위반에 따른 분쟁으로 공법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인인 투자자가 분쟁의 당사자로서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투자중재는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하 'BIT'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에서 투자에 따른 분쟁의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⁹⁾ 전세계에서 체결된 국제투자협정은 2011년 말 기준 총 3,164개로 그 중 BIT만 2,833개에 이른다.¹⁰⁾ 그리고 이들 투자협정들은 대부분 중재절차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¹¹⁾ 대한민국 정부도 중재조항이 포함된 국제투자협정을 총 87건 체결하였는데, 이 중 BIT가 81건이고 FTA가 6건에 이른다.¹²⁾ 따라서 아래에서는 국제중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중재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투자중재의 현황

2012년 말까지 ICSID에 신청된 투자중재 사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95개국이 관련된 가운데 61개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¹³⁾ 국가별로는 아르헨티

8) 중재법 제1조 및 제3조.

9) 이지은, "FTA와 투자자국가중재제도에 대한 단상", 「仲裁」 제337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33면.

10) UNCTAC,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Towards a New Generation of Investment Policies」, 2012, p.84.

11) Nida Mahmood, "Arbitration at ICSID: The Costs Involved", AILA, April, 21, 2013, available at <<http://blogaila.com/2013/04/21/arbitration-at-icsid-the-costs-involved-by-nida-mahmood>> (2013. 4. 27. 22:30 최종접속).

12) 이지은, 전제논문, 34면.

13) UNCTAD, *Recen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IA Issues Note, March 2013, p.4.

나(52건), 베네수엘라(34건), 에콰도르(23건), 멕시코(21건), 체코공화국(20건) 순서로 나타났다.¹⁴⁾ 경제영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2>에서 보듯이 석유, 가스, 석탄, 에너지, 물 등 자원 관련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1> 2011-2012 경제영역별 ICSID 중재사건 구성비

(단위 : %)

구분	2011	2012
Oil, Gas & Mining	25	25
Electric Power & other Energy	13	12
Transportation	11	11
Construction	7	7
Finance	7	7
Information & Communication	6	6
Water, Sanitation & Flood Protection	6	6
Tourism	5	4
Agriculture, Fishing & Forestry	5	5
Service & Trade	4	4
Other Industry	11	13

출처 : The ICSID Caseload-Statistics (Issue 2012-1, Issue 2013-1)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함

투자유치국 분쟁당사자를 지역별로 보면, 남미 30%, 동유럽 및 중동 23%, 아프리카 26% 등 이들 지역이 전체 분쟁의 79%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청구금액별 중재판정은 평균 수십 만 달러에서 수백 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Chevron v. Ecuador* 사건에서는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7,7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내려진바 있고, *El Paso v. Argentina* 사건에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4,300만 달러 이상의 배상 판정이 내려졌다.¹⁶⁾ 이에 비해 *White Industries v. India* 사건에서는 위의 사건들보다는 적은 5백만 달러 상당의 배상 판정이 내려진바 있다.¹⁷⁾¹⁸⁾

14) *Ibid*, p.29.

15) José Ángel Rueda, "ICSID publishes statistics on caseload since its creation and during 2012," available at <<http://blogaila.com/2013/02/10/icsid-publishes-statistics-on-caseload-since-its-creation-and-during-2012-by-jose-angel-rueda>> (2013. 2. 12. 17:50 최종접속).

16) *Chevron Corp. and Texaco Petroleum Company v. Ecuador*, Final Award, 31 August 2011; *El Paso Energy International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Award, 31 October 2011.

한편,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CSID 중재사건도 현재까지 총 2건이 보고되어 있으며, 그 첫 사례로는 1984년 Colt Industries Operating Corporation이 기술 라이선스 관련 특허침해 문제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당사자 합의로 종결된바 있다.¹⁹⁾

두 번째 사건은 론스타 관련 분쟁으로 현재 ICSID에 계류 중이다.²⁰⁾ 론스타는 한-벨기에 국제투자협정 내 규정되어 있는 중재조항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 위반을 주장하면서 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사건이다. 론스타 측은 국내 한 은행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연행위가 있었고 이는 결국 한국 정부의 간접수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수조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²¹⁾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본건 투자중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투자중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세계 정부를 대상으로 거대한 금액의 청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정결과에 따라 패소 당사자로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국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분야별 국제투자 중재사건의 신청금액과 판정금액이 인용된 몇몇 중재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3>과 같다. 공공서비스와 불법행위, 정부조달, 세금 관련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중재 신청금액이 사인 간의 계약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 사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7) *White Industries Australia Limited v. India*, Final Award, 30 November 2011.

18) 한편, 2012년 중재판정이 내려진 *Occidental v. Ecuador* (ICSID Case No. ARB/06/11)사건에서는 중재신청 금액 미화 2,359,500,000 달러 중 미화 1,769,625,000 달러의 배상 판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투자중재 사건 사상 역대 최고 배상액에 해당한다. UNCTAD, *Recen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IA Issues Note, March 2013, p.1.

19) 백대환, "Colt's INC vs 한국정부(국방부) ICSID 중재", 「仲裁」, 제333호, 대한상사중재원, 2010, 82면.

20) *LSD-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21) 김지환, "론스타, ICSID에 한국정부 제소", 「경향신문」, 2012. 11. 22, available at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21149391&code=920100) (2013. 2. 12. 19:00 최종접속).

〈표2〉 분야별 주요 중재신청 금액 및 중재판정 금액 비교표

(금액 : USD)

분야	신청금액	판정금액	당사자명
공공서비스	175,000,000	135,000,000	CMS Gas Transmission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출처: https://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
	52,000,000	5,533,000	Tecnicas Medioambientales Tecmed S.A.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00/2) 출처: https://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
	610,000,000	165,000,000	Azurix Corp.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12) - 출처: https://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
	145,000,000	12,000,000	Autopista Concesionada de Venezuela, C.A.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0/5) 출처: https://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
	140,000,000	16,685,000	Metalclad Corporation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7/1) 출처: https://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
불법행위	30,000,000	1,300,000	Marvin Roy Feldman Karpa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9/1) 출처: https://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
	395,000,000	43,000,000	El Paso Energy International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5) 출처: https://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 ; UNCTAD IIA ISSUES NOTE, April 2012, p.11.
	21,574,000	9,000,000	American Manufacturing and Trading Inc. Republic of Zaire (ICSID Case No. ARB/93/1) 출처: http://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0028.pdf
	1,600,000,000	96,000,000	Chevron Corp. and Texaco Petroleum Company v. Ecuador (PCA, Final Award, 31 August 2011) - 출처: http://italaw.com/documents/ChevronEcuadorFinalAward.pdf ; UNCTAD IIA ISSUES NOTE, April 2012, p.11.
정부조달	244,373,000	83,000,000	ADC Affiliate Limited and ADC & ADMC Management Limited, v. Republic of Hungary (Case No. ARB/03/16) 출처: https://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
세금	2,359,500,000	1,769,625,000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and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v.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6/11) 출처: https://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

* 출처 : ICSID 및 PCA 판정사례

** 표기 금액은 환율, 이자 및 표기 편의상 등의 이유로 실제 금액과 경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와 같이 투자분쟁의 경우 패소 당사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국가 간 투자협정은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증진 목적을 위한 협정의 체결과 동시에 분쟁의 방지를 위한 방법과 분쟁에 따른 방어전략, 패소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다각도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쟁 발생 시 투자중재의 절차진행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물론 패소에 따른 재정부담은 천문학적 액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대처방안까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들어 국제중재 분야에서 재정조달 및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하여 제3자 자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 중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아래 III장에서는 제3자 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들과 분쟁사례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동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로펌들이 제3자 자금계약을 체결할 경우 어떤 유의점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하여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II. 국제투자중재에서 제3자 자금의 주요 법적 쟁점

1. 서설

국제투자중재는 <표2>에 제시된 몇몇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액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백,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들도 다수를 차지한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패소하게 되는 일방당사자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존폐 문제와 결부될 수 있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세금 낭비 및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투자중재는 최고의 법률전문가 고용과 중재절차의 진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의 배상 책임 또한 부담할 수도 있다. 결국 당사자들은 재정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1차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개인 및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률비용 확보가 사건 진행여부를 결정하는데 크게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최근 들어 국제중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자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분쟁에 휘말린 당사자들로서는 자금 제공자가 막대한 금액의 법률비용을 지원함에 따라 중재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걱정 없이 사법접근권의 제고를 추구할 수 있고 재정 압박에 대한 위험 또한 분산시킬 수 있게 된다.²²⁾ 이미 여러 국제투자중재 사건에서 제3자 자금을 통한 자금조

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²³⁾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의 국제투자중재는 아직까지 많은 위험요인들이 내포되어 있어 쟁점별 논의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제투자중재에서 제3자 자금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쟁점으로서 분쟁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계약주체들 간의 이해충돌 문제와 분쟁해결 관점에서 투자중재 활용을 위한 중재절차 상 발생 가능한 쟁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금계약의 당사자 간 이해충돌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로서는 1) 자금 제공자의 자금계약 해지에 따른 문제, 2) 자금 제공자의 중재절차 개입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3) 패소에 따른 추가적인 배상비용의 책임주체 여부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중재 절차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로서, 1) 중재절차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자금조달 계약의 고지의 무 여부와 관련된 문제, 2) 변호사-고객간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과 관련된 쟁점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국제투자중재에 있어 제3자 자금계약의 당사자 간 이해충돌과 관련된 법적 쟁점 및 중재절차 상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들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제3자 자금업체와 신청인 간 이해충돌에 따른 법적 쟁점

(1) 자금 제공자의 자금계약 해지에 따른 문제

우선 제3자 자금계약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 가운데 자금 제공자의 일방적인 자금계약의 해지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자금 제공자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자금 신청인과 자금계약을 체결하려 할 것이다. 이 계약으로 인하여 자금 신청인은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을 포함한 중재절차 진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자금 제공자는 승소가능성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 자금은 사법접근권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까지 무분별하게 소가 제기될 수 있는 위험성 제고에 일조할 수도 있다.²⁴⁾ 이는 결과적으로 승소 가능성을 오관한

22) S. Khouri, K. Hurford and C. Bowman, *op. cit.*, pp.3-4.

23) *FTR Holding S.A., Philip Morris Products S.A. and Abal Hermanos S.A. v. Uruguay* (ICSID Case No. ARB/10/7); *Ioannis Kardassopoulos v. The Republic of Georgia* (ICSID Case No/05/18); *Siag and Vecchi v. Egypt* (ICSID Case No ARB/05/15); *Teinver S.A., Transportes de Cercanías S.A. and Autobuses Urbanos del Sur S.A.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9/1).

24) John Beisner, Jessica Miller & Gary Rubin, "Selling Lawsuits, Buying Trouble-third party litigation funding in the United States", Technical Report,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자금 제공자가 중재절차 진행 도중 자금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금계약 체결 전 확인하지 못하였던 자금 신청인 측 내부 문건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 서류가 중재판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판단하고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일부 자료를 자금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자금 제공자와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 *S&T Oil Equipment and Machinery Ltd. v. Romania* 사건을 들 수 있다.²⁵⁾ 본 사건은 S&T Oil사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암모니아 생산기업의 수용과 관련된 투자중재 사건으로서, 신청인 측 변호사 비용 조달을 위하여 Juridica Investment Limited(이하 'Juridica'라 한다)라는 전문적인 제3자 펀딩업체와 S&T Oil사가 중재비용 조달을 위한 자금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본 계약에서 Juridica는 승소에 따른 수익금과 S&T Oil이 보유하고 있는 루마니아 내 주식합명회사(joint stock company)의 모든 담보물(collateral)에 대한 우선특권((security interest)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변호사-고객간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도 허용 받은바 있다. 그러나 Juridica는 본 사건의 핵심내용을 밝힐 일부 자료를 S&T Oil사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금 신청인과의 계약 해지는 물론 S&T Oil사를 상대로 투자비용 및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하는 중재를 2010. 12. 22.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하였다.²⁶⁾

이에 대해 S&T Oil사 측은 미국 남부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에 Juridica의 RICO법(Racketeer Influenced by Corrupt Organizations Act)²⁷⁾ 위반 등을 이유로 자금 제공자를 제소하고, LCIA의 중재절차에 대한 잠정 가처분(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신청을 하였지만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은 S&T Oil의 주장을 기각하고, 2012년 1월 5일 제5순회 항소법원 역시 S&T Oil의 잠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²⁸⁾ 본 사례를 통해 제3자 자금계약의 해지는 또 다른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도

Reform, Oct. 2009, p.5.

25) *S&T Oil Equipment and Machinery Ltd. v. Romania* (ICSID Case No. ARB/07/13), available at <https://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 Bernardo Cremades, Jr., "Third Party Litigation Funding: Investment in Arbitration", *Transnational Dispute Management*, vol 8, issue 4, October 2011, pp. 25-33.

26) 참고로, *S&T Oil v. Romania*의 ICSID 중재사건은 2007. 7. 16에 개시되었으나, 중재비용 예납 불이행을 이유로 중재판정부가 2010. 7. 16에 ICSI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gulation 14(3)(d)에 따라 절차중지명령을 내려 사건이 종결된바 있다.

27) '조직범죄처벌법'이라 하며, 기업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연방법이다.

28) *S&T Oil Equipment and Machinery Ltd. v. Juridica Investment Ltd.*, 456 Fed.Appx. 481, 2012 WL 28242 [C.A.5(Tex.)].

있음을 알 수 있다.

S&T Oil사 투자분쟁 사건에서 자금계약의 해지로 인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면, 중재비용 대상 자금계약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중재합의의 유효성 및 관할권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²⁹⁾ 이와 동시에 제3자 자금계약에 근거한 자금 제공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변호사-고객간 특권의 포기로 이어지는지, 다시 말해, 당해 계약조건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어 보인다.³⁰⁾ 자금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자금 신청인의 비공개정보 열람이 투자계약 체결로 충분히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할 것이며, 자금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투자중재에서 기업의 비공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변호사-고객간 특권의 포기는 물론 중재의 장점 중 하나인 대외비적 성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위 사례를 통하여 제3자 자금조달계약에 따라 계약당사자들 간의 정보공개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나아가, 변호사-고객간 특권과 관련된 쟁점과 관련하여 제3자 자금조달계약서 내에 존재하는 중재합의의 인정 여부 등 다툼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분쟁들은 제3자 자금조달계약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문제이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세계적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자금 제공자의 절차개입 가능성

둘째로, 제3자 자금조달계약에 따른 자금 제공자의 발언권과 요구조건에 대한 신청인의 수용 정도에 따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자금 신청인 측 변호사가 신청인의 이익보다는 변호사 비용을 제공하는 자금 제공자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생기는 이해충돌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³¹⁾

우선 자금 제공자는 승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의 정보를 요구하려 들 것인데, 특히, 계류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고객간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으로 보호되는 모든 비밀정보까지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자금 신청인으로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중재비용의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금 제공자의 요구 조건을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자금 제공자가 중재절차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29) Bernardo Cremades, Jr., *op. cit.*, p.30.

30) *Ibid.*, p.29.

31) S. Khouri, K. Hurford and C. Bowman, *op. cit.*, p.7.

예를 들어, 중재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들 간에 화해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 제공자가 제시하는 금액 이하에서는 합의하지 못하도록 신청인에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³²⁾

이와는 반대로,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중재절차를 최후까지 진행시켜 중재판정을 받고 싶지만 자금 제공자가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화해를 종용할 수도 있고, 신청인 측 변호사가 자금 제공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신청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³³⁾ 이러한 자금 제공자의 절차 개입은 실질적 분쟁당사자들의 자유해결의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법조 윤리의 문제도 불거질 수도 있다.

또한 제3자 펀딩업체와 중재인 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문제될 여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자금 제공자 역시 일방당사자와 동일한 주체로 평가해야 할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다.³⁴⁾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중재인이 자금 제공자가 이전에 자금을 제공한 다른 사건의 대리인 측 소속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면 중재인과 자금 제공자 사이의 관계가 투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³⁵⁾ 그러한 중재인은 이미 이전에 법률 대리인으로서 당해 자금업체와 금전적 관계가 형성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금 제공자의 개입은 중재판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재판정의 진정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실제로, S&T Oil 사건에서도 S&T Oil에 투자한 Juridica가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선특권이 있는 담보의 요구와 기존에 체결된 변호사들과의 대리권 계약 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³⁶⁾ 또한 변호사-고객간 특권으로 보호되는 정보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바 있는데, 이는 자칫 자금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재의 장점 중 하나인 비공개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32) Munir maniruzzamann,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A Menace or Panacea?", University of Portsmouth, *ITA*, December 2012, p.1, available at <http://kluwerarbitrationblog.com/bolg/2012/12/29/third-party-funding-in-international-arbitration-a-menace-or-panacea> (2013. 3. 9. 19:20 최종접속).

33) S. Khouri, K. Hurford and C. Bowman, *op. cit.*, p.7.

34) Marc J. Goldstein, "Should the Real Parties in Interest have to stand up? - Thoughts About A Disclosure Regime for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ransnational Dispute Management*, Vol. 8 issue 4 ISSN 1875-4120, 2011, p.5.

35) *Ibid*, pp.5-6; S. Khouri, K. Hurford and C. Bowman, *op. cit.*, p.8.

36) Bernardo Cremades, Jr., *op. cit.*, pp.26-27.

있어 접근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만일 국가 당사자가 자금 신청인이 되었을 경우에도 자금 제공자의 발언권이 상당 부분 개입될 소지가 있다. 특히 자금 제공자가 공공이익에 반하는 국가정책에 정치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에서의 공공이익과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³⁷⁾

(3) 패소에 따른 당사자 간 추가비용 배상 관련 갈등 가능성

마지막으로, 자금 신청자가 중재판정에서 패소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법률비용의 배상 책임소재가 누구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자금계약의 당사자 간 책임소재는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타방당사자의 법률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⁸⁾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투자중재 판정사례에서는 타방당사자의 법률비용 배상책임을 자금 제공자에게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바 있다.³⁹⁾ 본건 중재판정부는 제3자 자금계약을 보험계약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였고, 투자협정에 이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당사자들 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⁴⁰⁾

그러나 제3자 자금조달계약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과 미국 내 일부 법원에서는 자금 제공자가 사건에 대한 결정권 및 통제 권한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금 제공자 역시 소송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있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⁴¹⁾⁴²⁾

요컨대, 국제투자중재에 있어서 제3자 자금계약의 배상갈등 문제는 동 계약의 유형을 보는 기준과 자금 제공자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책임소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사자 간 추가비용에 대한 배상 갈등 문제는 1) 제3자 자금계약을 자금 신청인의 손실보전을 담보하기 위한 유형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자금 제공자가 본 사건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재판부 또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숙지할 필요가 있다.

37) Munir maniruzzamann, *op. cit.*, p.3.

38) S. Khouri, K. Hurford and C. Bowman, *op. cit.*, p.3.

39) *Loannis Kardassopoulos and Ron Fuchs v. Republic of Georgia*, ICSID Case ARB/05/ 18 and ARB/07/15 Award dated March 3, 2010, available at <<https://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 (2013. 4. 27. 14:30 최종접속).

40) Bernardo Cremades, Jr., *op. cit.*, p.33.

41) *Ibid.*, p.33.

42) *Abu-Ghazaleh v. Chaul*, 36 So. 3d 691(Fla. Dist. Ct. App. 2009); *McFarlane v. E.E. Caledonia Ltd.* (No.2), [1995] 1 W.L.R. 366; *Dymocks Franchise Systems (NSW) Pty Ltd v. Todd(Costs)*, [2004] 1 W.L.R. 2807; *Arkin v. Borchard Lines Ltd(Costs Order)*, [2005] 1 W.L.R. 3055.

(4) 소결

제3자 자금조달계약은 법의 올바른 집행과 당사자 균형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동 제도가 중재에 좀 더 활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의 이해충돌로 인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 사전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해충돌 문제에 관한 연구는 분쟁당사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확인하는 사전적 계기가 될 것이다.

우선 자금 제공자의 계약 해지로 인한 자금 제공자와 신청인 사이의 갈등은 이에 따른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 나아가 재판 관할권의 문제 등 여러 후발적인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중재절차에 어떻게든 개입하려 할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자금 제공자의 중재절차에 대한 개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자금 제공자가 신청인을 상대로 불공정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자금 제공자와 중재판정부와 기존에 있었던 이해관계로 인하여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자금 신청인이 중재판정에서 패소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 배상의 부담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역시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 간의 이해충돌 문제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법적 환경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들 간 이해충돌 문제는 중재절차 상 또 다른 법적 쟁점으로 불거질 소지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제3자 자금계약과 관련하여 중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중재절차 상의 법적 쟁점

(1) 제3자 자금계약의 존재 고지 여부

중재절차에 있어 제3자 자금계약의 존재 유무가 중재절차상의 다른 관련 당사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중재인 선정은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재규칙들은 이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인으로 선정된 자는 중재인 취임 수락에 앞서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무국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⁴³⁾ 이

와 마찬가지로, 제3자 자금조달계약의 체결 유무 역시 중재규칙 내에 규정화시킨다면 자금 제공자의 절차 개입에 따른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상당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규정하려면 방법론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제3자 자금조달계약의 고지의무의 대상과 시점, 방식 및 공개범위가 주요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⁴⁴⁾

우선, 제3자 자금계약 존재에 대한 고지의 대상에 있어, 자금 제공자가 중재 관련 당사자 전원에 대한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을 통해 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재절차의 진행 중 자신과의 관련성을 사실대로 고지하지는 의문이다.⁴⁵⁾ 자금 제공자는 사건 본질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투자에 대한 보상 여부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⁴⁶⁾ 따라서 자금 제공자의 의무적 고지와 위반 시 불이익에 관한 위협조항(*In terrorem clause*)⁴⁷⁾은 물론 중재관정부 스스로가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유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또는 중재인의 자발적 신고로 방지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중재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실질적 분쟁당사자들은 물론 제3자 자금 제공자까지 사전에 공개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⁴⁸⁾

나아가, 고지의 시점 역시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중재절차 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인의 고지 의무는 중재인 취임 수락 여부를 결정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⁴⁹⁾ 추후 기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피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점은 참조해 볼 만 하다.⁵⁰⁾

다음으로 고지의 방식에 있어 사무국에 대한 의무적 고지방식을 채택한다면 자금 계약의 존재 여부를 중재절차 개시 이전이나 중재절차 도중 발생하였다면 자금계약 체결 시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분명히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반

43)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0조 제2항.

44) Munir maniruzzamann, *op. cit.*, p.3.

45) S. Khouri, K. Hurford and C. Bowman, *op. cit.*, p.8.

46) Eric De Brabandere and Julia Lepeltak,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Grotius Centre Working Paper N° 2012/1, Universiteit Leiden, p.6; John Beisner, Jessica Miller & Gary Rubin, *op. cit.*, p.1.

47) “위협조항”은 유언장에 대해 어느 누구라도 그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법성에 도전하는 경우, 그러한 자는 유언장에서 명시된 전액을 상속받는 대신, 아예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단지 명목상의 소액만을 받게 된다고 위협하는 규정의 조항을 일컫는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들 사이에 법적 소동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된다.

48) Marc J. Goldstein, *op. cit.*, p.8.

49)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3조 제1항.

50)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3조 제3항.

해, 자발적 방식을 채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들의 양심에 맡기고 스스로 사무국에 통지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중재기관에 고지할 경우 당사자 정보의 비공개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중재절차의 진정성 보호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⁵¹⁾

마지막으로, 고지의 범위에 있어서는 계약의 존재 유무만으로 한정할지 또는 계약의 당사자명을 포함한 계약조건까지 모두 포함시킬지의 여부 등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경우 고객과 변호사 사이의 보수계약은 자금출처가 공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국가별 법적환경이 다른 상황에서는 자금계약 자체를 비공개정보로 간주할 수도 있어 세계적 기준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재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⁵²⁾

이상과 같이 고지의무의 방식 및 범위, 해당시점의 결정이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필요한지와 정당한지 등에 대한 포괄적 후속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제3자 자금조달계약과 변호사-고객간 특권 존재 여부

제3자 자금계약에 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은 변호사-고객간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과 관련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자금 제공자는 자금신청인의 주장을 평가하고 어떤 조건으로 투자할지, 그리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금 신청인이 특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비밀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⁵³⁾ 이는 앞에서 소개한 *S&T Oil v. Juridica*의 중재사건에서 본 바와 같다. 변호사-고객간 특권은 변호사와 고객 간의 비밀의 의사교환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에, 변호사-고객 범위 밖의 제3자에 대한 자발적인 공개는 일반적으로 이 특권의 포기라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⁵⁴⁾ 아래에서는 특권(privilege)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중재절차 중 발생 가능한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

51) Marc J. Goldstein, *op. cit.*, p.8.

52) *Ibid*, p.4.

53) John Beisner, Jessica Miller & Gary Rubin, *op. cit.*, p.8.

54) A. Frischknecht and V. Schmidt, "Privilege and Confidentiality in Third Party Funder Due Diligence: The Posi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Switzerland and the Resulting Expectations Gap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ransnational Dispute Management*, vol 8, issue 4, October 2011, p.8. *U.S. v. Stewart*, 287 F. Supp. 2d 461, 464 (S.D.N.Y. 2003)에서도 '제3자에게 변호사-고객간 특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공개는 이 특권의 포기라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한다(각주 44 재인용).

기로 한다.

1) 특권(privilege)의 개념

특권(privilege)이란 민·형사 소송이나 기타 분쟁해결절차 또는 징계절차 등에서 특정한 문서나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⁵⁵⁾ 그 중에서 변호사-고객간 특권은 가장 오래된 권리로써, 이는 변호사와 그 의뢰인 간에 완전하고 솔직한 의사교환을 권장하고 의뢰인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믿을 만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⁵⁶⁾ 변호사-고객간 특권은 의뢰인과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률문제에 관한 조언을 위해 주고받은 비밀 서신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변호사와 제3자 간의 비밀서신까지 보호해 주는 ‘변호사 직무성과물에 대한 예외(work product doctrine)’와는 구별된다.⁵⁷⁾⁵⁸⁾ 이 두 개념은 특히 국제중재에서 증거채택을 위하여 증거개시(discovery)⁵⁹⁾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여 증거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2) 특권(privilege)의 포기

의뢰인이 이와 같은 특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특권의 적용대상인 서류를 현재 진행 중인 공개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거나,⁶⁰⁾ 그 내용을 증인신문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는 것(공개된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도 특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⁶¹⁾ 이러한 관점에

55) 김갑유·양성우,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서류공개의무와 그 예외로서 변호사-고객간 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에 관한 연구”, 「법학평론」 창간호, 서울대학교, 2010, 465면.

56) Bernardo Cremades, Jr., *op. cit.*, p.37.

57) Peter Ashford, *Handbook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JurisNet LLC, 2009, p.135(인용); 김갑유, 양성우, 전제논문, 465-466면(재인용).

58) *Wi-Lan, Inc. v. Acer, Inc.*, No. 2:07-cv-473, 2010 WL 4118625 (E.D. Tex. Oct. 18, 2010)에 따르면 변호사 직무성과물에 대한 예외는 증거개시절차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의 소송준비를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당사자 대립주의 구조(adversary system)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며, 변호사-고객간 특권은 변호사와 고객 간 비밀의 의사교환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한다.

59) 증거개시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의 소송절차의 특징 중 하나로, 소송 당사자 또는 소송당사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변론전 절차를 의미한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안정혜, “국제중재에서의 전자증거개시-전자증거개시를 규율하는 규정의 제정을 중심으로”, 「仲裁研究」 제20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0, 68면 참조.

60) Edna Selan Epstein,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and The Work Product Doctrine*,” American Bar Association, 2007, p.418(인용); 김갑유, 양성우, 전제논문 472면.(재인용).

61) 김갑유, 양성우, 전제논문, 472면.

서 보면, 자금 신청인이 제3자 자금업체에게 특권에 의해 보호받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이 제3자 자금을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논거가 되기도 한다.⁶²⁾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공동이익의 법리(Common Interest Doctrine)’⁶³⁾에 의해 제3자에게의 공개가 특권의 포기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⁶⁴⁾ 그러나 *Leader Technologies, Inc. v. Facebook, Inc.* 사건⁶⁵⁾에서 법원은 소송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이익은 법적 이익이 아닌 상업적 이익이기 때문에 ‘공동이익 특권(common interest privilege)’에 의해 제3자 자금업체와 공유된 정보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투자자와 공유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한편, *Mondis Technology, Ltd. v. LG Electronics, Inc.* 사건⁶⁶⁾에서는, 이와는 달리, 변호사 직무성과물에 대한 예외에 의해 문서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변호사협회의 윤리위원회 20/20(American Bar Association's Commission on Ethics 20/20)은 2010년 11월에 발행한 Issues Paper⁶⁷⁾에서 변호사

62) 같은 취지로 Bernardo Cremades, Jr., *op. cit.*, p.36-37; John Beisner, Jessica Miller & Gary Rubin, *op. cit.*, p.8.에서는 이와 같은 포기가 일어나는 경우 의뢰인과의 의사교환이 제3자 펀딩업체들이 볼 수 있고, 이는 곧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상대방도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변호사들이 알고 있기에 그들의 의뢰인에게 완전한 법률자문을 서면으로 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다고 한다.

63) ‘공동이익의 법리’는 ‘공동이익 규칙(common interest rule)’, ‘공동이익 특권(common interest privilege)’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공통적인 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당사자들에게 상호 간에 그리고 그들 각각의 법률 대리인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리를 일컫는다. 더 상세한 내용은 <<http://us.practicallaw.com/0-510-1094>> 참조.

64) A. Frischknecht and V. Schmidt, *op. cit.*, p.8. 이에 따르면 ‘공동이익의 법리(Common Interest Doctrine)’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i) 이 규칙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와 반드시 공통의 법적 이익을 공유할 것 (ii) 보호되어야 하는 주장은 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어야 하며, 유사한 이익이 아닌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법적이익(identical, or nearly identical, legal interest as opposed to merely a similar interest)을 공유해야 한다고 한다(각주 내용은 A. Frischknecht and V. Schmidt, *op. cit.*, p.8.과 Bernardo Cremades, Jr., *op. cit.*, p.38 재인용).

65) *Leader Technologies, Inc. v. Facebook, Inc.* 719F. Supp. 2d 373 (D. Del. 2010) Civil Action No. 08-862-JJF, June 24, 2010.

66) *Mondis Technology, Ltd. v. LG Electronics, Inc.* 2011 WL 1714304 (E.D. Tex.) Civil Action Nos. 2:07-CV-565-TJW-CE, 2:08-CV-478-TJW, May 4, 2011. 본건 재판부는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 원고의 모(母)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투자 중개인과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설명회 자료, 특허관련허락(licensing)과 소송전략 및 이에 관한 소송이익 등을 평가한 문서를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는 변호사 직무성과물에 대한 예외에 의한 보호는 소송자금 모집을 돕기 위하여 생산된 자료에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서류는 보호받지 못하며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소송을 돕기 위한 투자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의도로 준비된 문서는 변호사 직무성과물에 대한 예외에 의해 공개로부터 보호되며, 이들 문서가 제3자에게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비공개 합의에 따라 상대방이 이들 자료를 입수할 가능성을 높이지 않음을 이유로 이 공개는 곧 보호의 포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가 제3자 자금 제공자에게 특권에 의해 보호받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특권과 변호사 직무성과물에 대한 예외의 이익을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다.⁶⁸⁾

3) 소결

위에서 살펴 본 특권에 의한 보호는 나라 별 법제도의 차이에 의해 그 범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실제적, 절차적 법규가 결정되는 국제중재절차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재조항에 특권의 범위에 관하여, 즉 어느 나라의 법이 특권의 근거로서 적용될 것인가에 관하여 합의를 한다면 특권 또는 서류 공개에 관한 법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불의의 타격을 피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이 중재조항을 작성하는 당사자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⁶⁹⁾ 결국 이 문제를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것인가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판정부가 어떤 법을 적용시킬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권에 의해 보호가 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고 있는 특정 문서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법을 적용시키는 방법, 즉 최밀접성 원칙⁷⁰⁾(The most closely connected rule)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원칙은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당사자의 국적, 당해 법률조언을 제공한 변호사의 국적, 그리고 어떤 국내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근거로 가장 밀접성이 높은 법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동 규칙의 경우 각 문서마다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법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양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서로 달라 당사자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⁷¹⁾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양 당사

67)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Commission on Ethics 20/20 Working Group on Alternative Litigation Financing, available at http://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migrated/2011_build/ethics_2020/alt_lit_financing_issuespaper.pdf (2013. 4. 11. 02:15 최종접속)

68) A. Frischknecht and V. Schmidt, *op. cit.*, p.11.

69) 김갑유·양성우, 전계논문, 493면; Javier H. Rubinstein & Britton B. Guerrina, "The Attorney Client Privilege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Volume 18, Issue 6, at 596-597(A. Frischknecht and V. Schmidt, *op. cit.*, p.24(재인용)).

70) 또는 최근관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김갑유·양성우 전계논문). 국제사법 분야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밀접성의 원칙이라고 표현한다.

71) 김갑유·양성우, 전계논문, 495면.

자의 법 중 보호의 정도가 더 큰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최대혜택의 원칙(The most favored nation rule)과, 보호의 정도가 가장 작은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최소혜택의 원칙(The least favored nation rule; 또는 최저공통분모 원칙(The lowest common denominator rule)이라고도 한다)이 있다. 이 두 원칙은 모두 양당사자에게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며 특히 이 중 최대혜택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보호의 정도가 작은 국가의 일방당사자가 그가 기대하였던 정도를 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⁷²⁾ 사건으로는, 중재판정부가 이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것이 좀 더 보편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IV. 결론 및 시사점

국제중재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2-3년 전부터 국제중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자금조달 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중재제도가 그만큼 많이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산업이 발전하면 다른 분야의 산업 역시 해당 산업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3자 펀딩업체들은 국제상사중재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제투자중재 분야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제3자 자금계약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이 국제투자중재 분야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제투자중재 분야가 국제상사중재 분야보다 사건의 수에 있어서는 적지만 워낙 천문학적인 분쟁금액과 중재절차에 소요되는 상당한 액수의 법률비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국내에서는 중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자금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향후 기업이나 로펌, 그리고 제3자 자금 산업에 진출할 수도 있는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국제중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자금계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과 분쟁사례들에 대해 미리 검토하는 것은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72) A. Frischknecht and V. Schmidt, *op. cit.*, p.25; 이 논문의 p.26에서 저자들은 제3자 자금 제공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due diligence)와 관련하여 법적 특권과 비밀보호의 측면에서 최대혜택 원칙(most favored nation)의 접근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중재판정부가 이를 적용하는 경우 양당사자들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할 수 있으며 이는 문서나 변호사와의 서신교환 등을 보호하는 추가적이며 독립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제중재절차에서 자금을 투자받은 당사자의 특권 포기 위험이 그의 법체계에서 소송을 할 때와 유사한 환경 하에 그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라고 한다.

우선 국제중재에서 제3자 자금조달계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쟁점으로 제3자 자금조달계약의 당사자 간 이해충돌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첫째, 자금 제공자가 중재절차 도중 자금조달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자금 제공자가 자금조달계약 체결 전 확인하지 못하였던 중재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금 신청인 측 내부 문건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자금 신청인이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자금 제공자와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는 변호사-고객간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과 관련된 쟁점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당사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단체들의 협의를 통한 표준지침서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금 제공자의 중재절차 개입과 관련된 문제로서, 우선 중재절차 도중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으나 자금 제공자와 신청인 간에 합의금액을 놓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자금 제공자와 신청인 간의 합의 사안이지 이에 대한 기준을 제3의 단체가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금 신청인의 대리인이 자금 제공자와 기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자금 제공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우나, 자금 제공자가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재인 선정에 포함된 중재절차에 개입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윤리적인 문제를 수반하므로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등이 이러한 문제를 규율할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중재판정의 패소에 따른 자금조달계약의 당사자 간 추가 배상비용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자금 신청인과 중재절차의 상대방 간의 중재합의에 따라서는 중재절차에서 패소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나 중재비용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 자금업체로서는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까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며, 자금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패소비용까지 자금 제공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다룰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조달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⁷³⁾

73) 제3자 펀딩업체로서는 중재판정 패소에 따른 추가 배상비용을 예측하거나 추가 부담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자금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후법률비용 보험(after-the-event insurance)'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사후법률비용 보험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자금조달계약의 당사자 간 이해충돌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 이외에 중재 절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제3자 자금조달 관련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재 절차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제3자 자금조달계약의 고지의무 여부 관련 문제가 특히 문제될 수 있다. 즉, 제3자 자금조달계약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 여부, 고지의 범위 및 방식, 고지의 시점 및 기한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범세계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할 지 각 중재기관의 규칙에서 이를 규율할 지 후속적인 연구들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⁷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중재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자금조달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최근에 들어서야 논의가 시작된 매우 생소한 분야이다. 따라서 향후 제3자 자금조달계약의 당사자들 간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의 문제와 중재절차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재제도가 발전하면 주변산업이 발전할 수도 있듯이, 제3자 자금조달 제도를 포함한 주변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 또한 중재제도를 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갑유·양성우,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서류공개의무와 그 예외로서 변호사-고객간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에 관한 연구”, 「법학평론」 창간호, 서울대학교, 2010.
- 김지환, “론스타, ICSID에 한국정부 제소”, 「경향신문」, 2012. 11. 22.자, 접속일 2013. 4. 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영국에서는 제3자 자금업체들이 자금 신청인에게 의무적으로 동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Christopher Bogart,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urford, 2013, p.5.

- 74) ‘세계변호사협회의 국제중재에 있어서 이해충돌에 관한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Bar Association's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에서는 단지 중재의 결과에 있어서 “중대한 재정적 이해(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구로만은 중재판정부가 제3자 자금계약의 존재 고지의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너무 자의적이고 상충되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미국 대법원 규칙 제29조 제6항에서는 당해 당사자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모기업과 기타 일반 주주(public shareholder)는 고지의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Christopher Bogart, *op. cit.*, p.4.

artid=201211221_149391&code=920100

- 백대빈, “Colt’s INC vs 한국정부(국방부) ICSID 중재”, 「仲裁」, 제333호, 대한상사중재원, 2010.
- 안건형, “클레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자금조달 제도 - 경영학과 법학 분야의 新 융합과생상품을 중심으로”, 「貿易學會紙」 제38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3.
- 안정혜, “국제중재에서의 전자증거개시 - 전자증거개시를 규율하는 규정의 제정을 중심으로”, 「仲裁研究」 제20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0.
- 이지은, “FTA와 투자자국가중재제도에 대한 단상”, 「仲裁」 제337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 Beisner, J., Miller, J., & Rubin, G., “*Selling Lawsuits, Buying Trouble-third party litigation funding in the United States*,” Technical Report,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 Oct. 2009.
- Bogart, C.,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urford, 2013.
- Cremades Jr., B., “Third Party Litigation Funding: Investment in Arbitration,” *Transnational Dispute Management*, vol 8, issue 4, October 2011.
- De Brabandere, E. and Lepeltak, J.,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Grotius Centre Working Paper N° 2012/1, Universiteit Leiden.
- Frischknecht, A. & Schmidt, V., “Privilege and Confidentiality in Third Party Funder Due Diligence: The Posi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Switzerland and the Resulting Expectations Gap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ransnational Dispute Management*, vol 8, issue 4, October 2011.
- Goldstein, M., “Should the Real Parties in Interest have to stand up? - Thoughts About A Disclosure Regime for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ransnational Dispute Management*, Vol. 8 issue 4 ISSN 1875-4120, 2011.
- Khouri, S., Hurford, K., and Bowman, C.,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nd treaty arbitration - a panacea or a plague? A discussion of the risks and benefits of third party funding,” *Transnational Dispute Management*, vol.8, issue 4, October 2011.
- Mahmood, N., “Arbitration at ICSID: The Costs Involved,” *AILA*, April 21, 2013.
- Maniruzzamann, M.,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A Menace

or Panacea?" University of Portsmouth, *ITA*, December 2012, p.1, available at <http://kluwerarbitrationblog.com/bolg/2012/12/29/third-party-funding-in-international-arbitration-a-menace-or-panacea>).

Rueda, J. A., "*TCSID publishes statistics on caseload since its creation and during 2012*," available at <http://blogaila.com/2013/02/10/icsid-publishes-statistics-on-caseload-since-its-creation-and-during-2012-by-jose-angel-rueda>).

UNCTAC,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Towards a New Generation of Investment Policies*, 2012.

UNCTAD, *Recen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IA Issues Note, March 2013.

ABSTRACT

Major Legal Issues with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Keon-Hyung Ahn

Sung-Ryong Kim

In-Ho Joe

As arbitration becomes an increasingly popular mode of resolving disputes, neighboring industries begin to take notice. This interest is reflected in the increasing utilization of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laims. In this regard, the third party funding industry appears particularly interested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claims because they typically involve considerable claim amounts and substantial legal fees.

To examine this trend more closely,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investor-state arbitration more precisely in Chapter II. In Chapter III, this study continues to examine some legal issues which can arise as a result of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parties to the funding agreement including, *inter alia*, 1) a dispute in which the funder terminates the agreement during the arbitration proceedings, 2) a dispute in relation to a funder's intervention in arbitration proceedings, and 3) a dispute on the responsibility for adverse costs orders, if any.

This paper further identifies major legal issues which can arise in relation to 1) disclosure of existence of the funding agreement, 2) attorney-client privilege. Lastly, in Chapter IV, this paper provides some lessons from an in-depth case study on third party funding agreements and solutions to avoid and to solve prospective disputes in the future.

Key Words : Investor-State Arbitration, Differences between Commercial Arbitration and Investor-State Arbitration, Third Party Funding, Case Study of Third Party Funding Disputes, Attorney-Client Privilege